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찬성팀)

조예나, 최유진, 김정훈, 탁효상, 최주혁, 김수인

**<입론>**

저희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즉 소년법 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소년법이란 만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하고, 만14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법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기에 저희는 청소년의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이 소년법을 알고 자신이 처벌을 심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전에서 일어난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처럼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미디어 매체 발달에 따라 범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1958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과 다릅니다. SNS, 게임, 유튜브 등의 대중매체로 범죄 관련 정보 접근 수준이 변화하였고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속도가 빨라져 외모만으로 나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의 한 중학생이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의 경우 이미 절도혐의로 실형을 받고 2월부터 8월까지 수감됐다가 출소했던 전과가 있지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들 중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2007년 6.9%에서 2016년 15.3%까지 증가하여 재범률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10년동안의 소년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다시 한번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의 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근거자료 1.**

>. 2020년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064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92454_32531.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07048?sid=102>

////////

<https://m.insight.co.kr/news/276905>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6097>

**근거자료 2.**

>. 중학생 시내버스 절도 운행 사고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50568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1:08 ~

**근거자료 3.**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제2장 제4부 제2절-2-(다) / 152p~153p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0668>

**근거자료 4.**

>. 재범률

뉴스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4>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09>

**<반론>**

(상대팀 예상 반론에 대한 답변.)

1.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라온 환경의 탓이다.

환경이 절대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은 모두 강도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규칙을 세우고자 법을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따르기로 했고 법을 어길시에는 공평하게 벌을 받기로 정했다. 법을 어긴 정도가 같다면 나이,직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죄를 환경의 탓으로 정당화 시킬시, 자칫 나도 해볼까?하는 식으로 또 다른 범죄행위를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

2.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으므로 기회를 주어야한다.

요즘에는 소년범죄가 널리 알려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에게 약한 처벌을 가하고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 기회는 갱생의 기회가 아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쥐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되어 그 칼날이 또 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관대를 베풀기 전에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한다.

3. 소년원에서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

일반 교도소도 아닌 소년원에서는 교정교육이 목적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4. 의사결정 나이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건 인지하지만,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실제 미국에서는 부모책임법이 있어서 주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사회봉사, 교육, 구금 등을 시행하고있다.

+ 소년법에서 제정한 소년의 나이는 10~19세이다. 이를 소년으로 제정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의 실효성이 모자라다면, 강화하는 게 맞다.

5. 처벌 강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심을 두고있음.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흉악범죄는 2006년에 비해 약 2배 상승했다.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처벌 강화로 인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음, 즉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도 있지만 이후에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교정이다.

+ 낙인효과를 줄 수 있음.

7. 처벌강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한다.

성인의 범죄 폭력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청소년의 범죄 폭력화 경향은 점차 증가한다. 성인은 범죄 예방이 잘 되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재범률 증가 중

[n번방·무면허운전 살인…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 머니투데이 (mt.co.kr)](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614053393908)

8 .청소년은 쉽게 교화 가능하다.

소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잘따라주지 않음 (통계자료 ㅇ)

9.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소년법의 특성을 알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지에 의함 절대 X.

["촉법소년인데 어쩔래" 제도 악용 청소년 '봇물'…"애들이 더 무섭다" 들끓는 여론, 대책은? (dailian.co.kr)](https://www.dailian.co.kr/news/view/988432/?sc=Naver)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언터처블' 공포의 10대…'소년법' 폐지가 해법일까? - 머니투데이 (mt.co.kr)](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90713488252976)

[12살 초등학생이 `제2의 n번방` 운영진…다시 떠오른 `촉법소년` - 매일경제 (mk.co.kr)](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367791/)

**<최종변론>**

화순군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도 10대 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사건의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진짜로 처벌의 강화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다양한 사례에서 보다시피 피해자는 대부분이 동일한 연령대입니다. 만약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다시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해 갈 것입니다. 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도 함께 변합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사고도 변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소년범죄에 관해서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관대한 적용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더 어지럽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년범죄를 기존의 규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년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명의 청소년들은 관대한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기를 더해 악용을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바라본다면 이 청소년들이 자라 더 큰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년범죄를 기존의 규정으로 다를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단기간의 보호처분과 그런 기록들을 명예시 여기는 일부 소년범들 그리고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범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피해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